

KBS스포츠월드 수영장
수질관리 약품 구매 과업지시서

KBS비즈니스

수영장 수질관리 약품 구매 과업지시서

1. 목적 및 범위

- 1) 이 조건은 2025년도 수질관리 약품을 구매하는 (주)KBS비즈니스(이하 “계약자” 라 칭함)와 계약상대자(이하 “계약상대자” 이라 칭함)가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) 본 시방서는 KBS스포츠월드(서울)의 수질관리를 위해 납품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.

2. 일반사항

- 1) 모든 제품은 수영장에 널리 사용되는 최상질의 제품이어야 하며 풀장 수처리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“지정수 처리제 제조업 등록 업체”로서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“수처리 허가를 득한 약품”이어야 한다.
- 2) 풀장 수처리제 약품은 먹는물 관리법 제41조 1항 규정에서 정한 자가품질 검사의 의무를 다하고 그 품질보증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(계약 시 각 품목별 약품 검사결과서 제출)
- 3) 품질보증검사는 국가공인기관(한국화학시험연구원)에 의뢰하여야 한다.
- 4)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필요시 임의채취 하여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기준이하로 판정 시 기 납품된 제품을 반납한다. 단, 시료채취 시 납품자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.
- 5) 납품자는 2회 이상 기준이하 판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검사수